

대법원 2022. 3. 11 선고 2021다287232 판결 [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3. 11 선고 2021다287232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8 선고 2021나57115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

피고, 피상고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섭

판결 선고 2022. 3. 11.

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1나57115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태악, 주 심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대법관 오경미